

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규정

제정 2010. 9. 1

개정 2012. 3. 1

개정 2016. 7.20

개정 2016.10.31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교법인 청강학원 정관 제47조의2에 의한 청강문화산업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 교직원의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신청대상) ① 명예퇴직신청대상자는 대학의 교직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 중에서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자진 퇴직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.

② 희망퇴직신청대상자는 대학의 교직원으로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자 중 원활한 경영을 위해 자진 퇴직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.

제3조(신청의 제한) ①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 신청 마감일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직원은 신청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1. 징계요구 중에 있는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징계 중에 있는 자
2.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에 있는 자
3. 타 기관(동일업종 포함)이나 산업체에 임용되는 자
4. 그 밖에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
5. 임용계약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

② 총장은 교직원 수급계획,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의 허가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.

제4조(심사위원회) ①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명예(희망)퇴직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은 5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총장이 위촉하는 교직원으로 한다.

③ 교학본부장과 교육지원처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.

④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2/3의 출석과 출석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위원회는 명예(희망)퇴직 대상자 심의, 명예(희망)퇴직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.

제5조(공고) 총장은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대상범위, 인원, 신청기간 등을 정하여 매학기 공고하여야 한다.

제6조(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의 신청)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을 희망하는 자는 제5조에 의거 공고한 기간 내에 별첨<서식1>의 명예(희망)퇴직신청서를 각각의 인사담당 부서에 제출한다.

제6조2(수시퇴직) 제6조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호 1에 해당되는 경우 수시 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.

- 1. 직제와 정원의 개폐로 퇴직을 신청할 경우
- 2. 중대한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을 신청할 경우

제7조(심의 및 결정) 인사담당 부서에서는 제6조에 의하여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마감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허가 대상자를 총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.

②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일은 매학기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③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허가 대상자를 심의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.

- 1. 공상 또는 상병으로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자
- 2. 직급 및 직위의 고저
- 3. 업적평가
- 4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④ 총장은 위원회로부터 퇴직대상자를 추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예산 및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퇴직대상자를 결정한다.

⑤ 수시퇴직은 교원인사 담당부서를 경유하여 총장이 결정할 수 있다.

제8조(결정 통지) 퇴직대상자가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한다.

제9조(사직원 제출) 퇴직대상자는 퇴직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직원을 제출한다.

제10조(명예,희망퇴직수당지급) ① 명예(희망)퇴직자에게는 명예(희망)퇴직수당을 지급하되, 수당의 지급액은 <별표 1>의 명예(희망)퇴직 수당 지급액 산정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. 단, 제6조2의 경우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급액 산정 기준에 의거 최대금액 이내에서 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명예(희망)퇴직이 결정된 자가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동일업종으로 이직할 경우, 명예(희망)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16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명예(희망)퇴직 수당 지급액 산정표

정년 잔여 기간별 대상자	산 정 기 준	근무기간별 지급율
1년 이상 5년 이내인자	퇴직당시 월봉급액의 81%/2 × 정년 잔여월수	각 산정금액의 100%
5년 초과 10년 이내인자	퇴직당시 월봉급액의 81%/2 × {60 + (정년 잔여월수 - 60) / 2}	
10년 초과인자	퇴직당시 월봉급액의 81%/2 × {60 + (120 - 60) / 2}	

※ 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잔여월수의 계산은 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의 다음달 1일을 기준으로 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.

※ 월봉급액 산정기준은 우리대학 연봉지급 구성내역 중 기본급에 포함된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'본봉'을 기준으로 한다.

